



『 탄소중립+기후환경도시 』

2021 으뜸마을만들기 설명 자료





『 탄소중립+기후환경도시 』

2021 으뜸마을만들기 설명 자료

목 차

I. 2021 으뜸마을만들기 추진개요	3
1. 2021 으뜸마을만들기 추진계획	5
2. 2021 으뜸마을만들기 사업공모	8
3. 시범·실천 공모사업 신청양식	11
II.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추진방법 및 사업예시	27
1. 으뜸마을만들기란	29
2. 사업예시 유형	34
3. 마을별 사업 추진사례	35
III. 2030 스마트기후환경도시, 2050 탄소중립 이해하기	51
IV. 으뜸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회계처리 기준(요약본)	71

참고자료

1.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17
2.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작성시 고려할 사항	125

『탄소중립+기후환경도시』

I . 2021 으뜸마을만들기 추진개요

- 1. 2021 으뜸마을만들기 추진계획 5
- 2. 2021 으뜸마을만들기 사업공모 8
- 3. 시범·실천 공모사업 신청양식 11



『탄소중립+기후환경도시』

2021 으뜸마을만들기 추진계획

- ❖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및 2050 탄소중립 도시 만들기 연계 추진
- ❖ 주민들간 소통 및 공감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반 강화

I 추진방향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운영 내실화
- 마을단위 탄소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실천사업 확대

II 그간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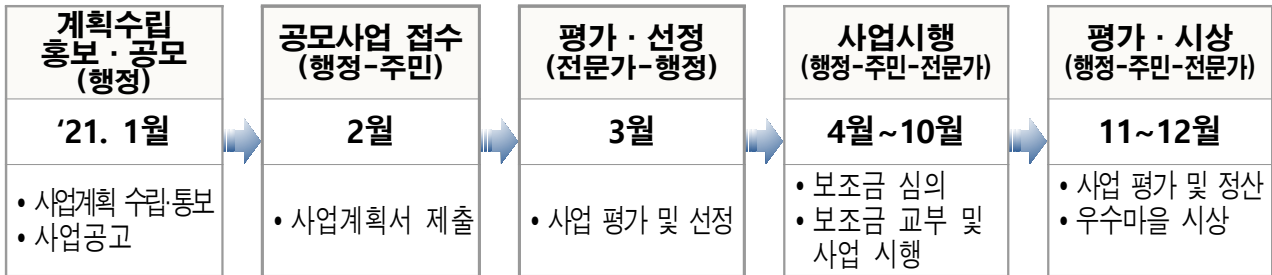
- 읍면동별 으뜸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 '11. 3.
-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조례 제정 : '11. 7.
- '11. ~ '20.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추진 : 총 638개 사업/ 1,717,000천원
 - 실천사업 540개소 672,400천원 / 시범사업 96개소 1,040,915천원 / 컨설팅 2개소 20,515천원
- 으뜸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구성 : '19. 3.

'20년 추진사진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 흐름도



■ 사업개요(공모)

- 신청대상 : 읍면동 으뜸마을만들기 추진단체(관내 주민단체 등과 공동 추진 가능) 또는 환경·마을만들기 단체
 - 관내 주민단체 (10인 이상의 독자적인 사업 및 집행체제를 갖춘 단체)
 - ※ 으뜸마을 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대표자회의, 주민모임단체 등
 - 환경, 교육, 복지, 경제 등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민단체 등
 - ※ 전문성과 보dana은 성과도출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을 권장함
- 접수기간 : '21. 1. 25.(월) ~ 2. 19.(금)
- 사업내용 : 【붙임1】 사업 예시유형 참고
- 예산액 : 130백만원
- 선정규모
 - 실천사업(2백만원 이내) 30개소, 시범사업(2~10백만원) 5개소, 컨설팅 1개소
 - 실천사업 우선 반영, 실천 및 시범사업수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실천사업과 시범사업 중복 신청 가능(최종 1개부문 선정원칙)
- 선정방법 : 으뜸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는 사업(단체 등)은 응모 제한
-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1	타 당 성	사업추진 필요성, 지속가능성 등	25
2	공 익 성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주민실천 기여도	25
3	효 과 성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만족도	25
4	추진체계	읍면동 으뜸마을 추진위원회 구성여부	25

- 사업기간 : '21. 4월 ~ 10월말까지 완료
 - 10월말까지 반드시 완료(연내 사업평가, 보조금 정산 등 절차 이행)

■ 사업평가 및 시상

- 일 시 : '21. 12월 중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평가반 : 전문평가단 구성·운영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 평가방법 : 성과보고서 및 PPT 자료 등 활용

■ 부서별 역할

시 (환경정책과)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비(보조금) 지급, 정산 • 사업설명회, 평가 총괄, 시상, 행정전반 지원
구 (환경미화과)	• 읍면동 사업계획서 등 공모신청서 취합제출 • 사업추진 행정지원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홍보 및 추진사업 발굴, 선정 지원 • 읍면동 으뜸마을만들기 추진단체 행정지원, 사업진행과정 관리 등
읍면동 으뜸마을만들기 추진단체	• 특색있는 마을 사업 발굴 및 선정 • 사업공모신청 및 시행 • 조직 활성화, 지역사회 협업추진, 주민 참여 확대 노력 등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 사업설명회 개최, 읍면동 사업 발굴 및 사업시행 컨설팅 • 공모사업 선정 및 우수마을 평가시 전문평가단 구성·운영 • 사례집 발간, 기타 필요사업 추진 지원 등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접수 : '21. 1~2월
- 으뜸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평가 및 사업선정 : '21. 3월
-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 '21. 3월말
- 보조금 심의(예산담당관) : '21. 4월중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 '21. 4월 ~ 10월
- 사업평가 및 시상 : '21. 12월

IV 행정사항

- 공모사업 신청서 취합 제출(읍면동 → 구 → 시) : '21. 2. 19.한



창원시 공고 제2021-150호

『2021년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창 원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0월
- 참가자격 :
 - 10인 이상 주민단체 (사업추진과 집행체제를 갖춘 단체)
 - ※ 으뜸마을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대표자회의, 주민모임단체 등
 - 환경, 교육, 복지, 경제 등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민단체 등
 - ※ 전문성과 보dana은 성과도출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을 권장함
- 지원예산 : 사업당 1~10백만원 이내(예산범위 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 사업심의에 의한 결정으로 지원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음.
 - (자신취득비 및 시설비 등 자산적 가치가 생성·증가되는 자본적 경비는 편성불가)
- 선정규모
 - 실천사업(2백만원 이내) 30개소, 시범사업(2~10백만원) 5개소, 컨설팅 1개소
 - 실천사업 우선 반영, 실천 및 시범사업수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실천사업과 시범사업 중복 신청 가능(최종 1개부문 선정원칙)
- 선정방법 : 으뜸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는 사업(단체 등)은 응모 제한
- 공모분야 : [붙임1] 사업예시유형 참고하여 신청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 1. 25.(월) ~ 2. 19.(금)
- 접 수 처 :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읍면동 담당자 직접 접수(※ 구청 환경미화과 취합 제출)



○ 제출서류

- ①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신청서 <서식1>
- ② ○○읍면동 으뜸마을만들기 추진단체 위원명부 <서식2>
- ③ 협력단체(단체, 공동체, 마을모임) 소개서 <서식3>
- ④ 협력단체(단체, 공동체, 마을모임) 회원명부 <서식3-1>
- ⑤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계획서 <서식4>
- ⑥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추진 협약서 **(해당시)** <서식5>

※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심사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으뜸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서면평가 및 필요시 현장평가 →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확정
- 선정기준 : 타당성, 공익성, 효과성, 추진체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1	타 당 성	사업추진 필요성, 지속가능성 등	25
2	공 익 성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주민실천 기여도	25
3	효 과 성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만족도	25
4	추진체계	읍면동 으뜸마을 추진위원회 구성여부	25

- 결과발표 : '21. 3월중 선정결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공문 통보

4. 유의사항

- 사업참여 단체는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한 설명회, 교육, 컨설팅 및 평가회, 밴드나 페이스북 등 SNS 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는 사업(단체 등)은 응모가 제한됩니다.
- 사업종료후 사업비 정산은 지방보조금 회계처리지침에 맞게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업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창원시 환경정책과(☎225-34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추진일정은 시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예시 유형

※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보전 활동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높은 점수가 부여함

공모분야	사업예시
실천사업 권장유형	1. 우수관으로 오수 배출실태 조사 및 저감사업 2. 우리마을 하천 등 정기적 환경정비 활동 3. 도시열섬 완화위한 담장 벽면녹화 4. 녹지, 나무밑 잔디훼손부 등 상록 지피식물 식재 5. 미세먼지 흡수원 나무식재 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견학) 7. 기후행동의 날 또는 자전거 타기 동참 캠페인 8.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시민홍보 · 교육사업 9.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활동 10.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11.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홍보 사업 12. 도시텃밭 조성 및 나눔사업 13. 우리동네 아름다운 자연경관 찾기 및 홍보사업
시범사업 권장유형	1. 취약계층 지붕온도 낮추기 사업(지붕 빗반사 페인트 시공 등) 2. 우리마을 빗물저금통 갖기 사업 3. 마을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모니터링 사업 4. 방치된 자전거 수거, 수리, 나눔사업 5. 마을단위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 6.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등 쓰레기 재활용 사업 7. 우리동네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점 진단 및 개선활동 8. 우리동네 탄소포인트제 가입율 2배로 높이기 9. 우리동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사업 10. 우리동네 환경오염원 지도 만들기 11. 우리동네 전기,물 낭비요인 조사 및 개선사업 12. 우리동네 미관저해 환경불량장소 정비사업 13. 절수기 등 에너지 절약제품 공동구매 사업

※ 실천사업 및 시범사업 유형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사항입니다.

유형에 관계없이 사업비 2백만원 이내면 실천사업으로 신청바랍니다.



-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사업 - 공모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방법

□ 신청기간 : 2021. 1. 25.(월) ~ 2021. 2. 19.(금)

□ 접 수 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서류 일체 제출)

□ 제출서류

1.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신청서 <서식1>
2. ○○읍면동 으뜸마을만들기 추진단체 회원명부 <서식2>
3. 협력단체(단체, 공동체, 마을모임) 소개서 <서식3>
4. 협력단체(단체, 공동체) 회원명부 <서식3-1>
5.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계획서 <서식4>
6.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추진 협약서 <서식5>

※ 붙임 : 1. 사업유형 예시
2. 서식 작성 요령



〈서식 1〉

『탄소중립+기후환경도시』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공모 신청서

추진단체명 (고유번호)			대 표 자	
			실 무 자	
소 재 지 (도로명)			전화번호	
사 업 명				
협력단체명			대 표 자	
사업개요				
지원사업분야 (해당난에√표)	실천사업 ☐ 시범사업 ☐			
사 업 비 (단위 : 원)	총 사업비	보조금(A)	자부담(5%이상 설정)	
	원	원	원	
접수담당자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연락처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조례 19조, 20조에 따라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으뜸마을만들기 추진단체 대표] (인) 붙임 고유번호증(등록증명원 포함) 1부 창 원 시 장 귀하				

※ 지원 신청절차·방법, 지원금액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식2〉

추진단체명 (회원명부)

연번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비고 (소속단체명)
1	예)대표자					
2	부회장					
3	총무					
4	감사					
5	회원					
6						
7						
8						
9						
10						
11						
12						
13						
14						
15						

※ 반드시 추진주체 대표자 등 임원진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10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식3〉

협력단체(단체, 공동체, 마을모임) 소개서

협력단체명					
소재지 (새주소)	(우편번호)				
대표자	(연락처 :)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설립 목적					
회원 구성	- 임원구성 : 대표 명, 부회장 명, 총무 명 - 구성원수 : 명(남자 명, 여자 명)				
임원 현황 * 별지첨부 가능	구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새주소)
	대표				
	감사				
	총무				
주요 활동 분야	※새내기(신규) 마을모임 인 경우 앞으로 활동 할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활동 실적 (2018~2020)	※새내기(신규) 마을모임 인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 현황	- 예산총액 : 원 - 재원구성 : 회비(%), 사업수익(%), 기부금 등(%) 보조금(%), 기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휴대폰) : - E-Mail : - 소셜네트워크 : ※운영하는 카페, 밴드, 페이스북 등				



〈서식3-1〉

협력단체명 (회원명부)

연번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비고
1	예)대표자					
2	부회장					
3	총무					
4	감사					
5	회원					
6						
7						
8						
9						
10						
11						
12						
13						
14						
15						

※ 반드시 협력단체 대표자 등 임원진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10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식4〉

○○○ 으뜸마을 추진단체명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

-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지원 신청절차·방법, 지원금액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예산 편성 및 집행방안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 사업기간은 10월 31일까지 완료 요망
- 사업장소 :
- 사업비 : 천원(보조 : 천원, 자부담 : 천원)

2.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 사업지역 소개 (빨강 글씨체는 참고만 하시고, 지우고 작성하세요.)
 - 일반적 특성(주거형태, 인구구성), 마을특성, 사업 대상 등
 -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지역 특성에 따른 필요성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
 -
- 마을공동체 소개
 - 모임구성 동기, 구성과정, 단체 활동연혁 등
 -

3. 사업내용

- 사업 발굴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
-



○ 사업시행 수행을 위한 추진방안

-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 주요 추진전략, 교육 홍보 및 참여전략 등을 기술
- 회의 및 교육, 견학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사업시행 수행을 위한 추진방안

- 자부담 조성
- 자체 추진사항
-

○ 이해관계인 설득·동의 노력 등

-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인 경우만 작성
-

4. 세부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추진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인원	예산
사업명 1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내용과 관련된 교육 강사 파견 지원 가능(사전 협의)



5. 지역자원 협력 방안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현황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전 문 가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기 타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공동추진사업인 경우 참여 단체·기관의 역할이 드러나게 작성 요망

6. 향후 발전 및 사후관리 방안

- 탄소중립 시설물, 주민학습모임 등 향후 관리방안을 수립
-
-

7. 기대효과

-
-
-
-



8.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예산세목	금액	산 출 기 초(부가가치세 포함)
총 사업비			
보조금	소 계		
	홍보비	320,000	•파켓 30,000원×4개 = 120,000원 •어깨띠 2,000원×50개 = 100,000원 •현수막 50,000원×2개 = 100,000원
	강사비	260,000	•강사비 130,000원× 2명 = 260,000원 (3급강사, 기본 1시간 80,000원, 추가 1시간 50,000원)
	송금수수료	20,000	•강사료 등 계좌이체 송금수수료
	인쇄비	300,000	•자료집 10,000원×30 = 300,000원
	재료비	1,000,000	•녹화용 지피식물 = 1,000,000원
자부담	소 계		
	다과비	60,000	•행사참석자 접대비(음료, 떡) 3,000원 × 20명 = 60,000원
	식비	160,000	•행사참석자 식비 8,000원 x 20명 = 160,000원

※ 위 표는 예시문으로 「2021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과 및 회계처리 기준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목은 구체적으로 강사비, 회의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국내여비, 식비,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송금수수료,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세부사항을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붙임2]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예산규모와 공모신청사업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서식5〉

2021년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사업 공 동 추 진 협 약 서

○ 사 업 명 :

○ 주관단체 : 000 으뜸마을만들기 추진단체

주 소)

대표자)

(인)

○ 협력단체 : 주민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

주 소)

대표자)

(인)

위와 같이 『2021 창원시 으뜸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 주관단체는 협력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단체 :

주 소 :

대 표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 읍면동 으뜸마을추진위원회와 외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할 경우 작성
- ※ 협약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많을 경우 이 양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주관단체는 읍면동 으뜸마을추진위원회가 하되, 참여 협력단체 간 협의에 의해 주관 단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업예시 유형

※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보전 활동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높은 점수가 부여함

공모분야	사 업 예 시
실천사업 권장유형	1. 우수관으로 오수 배출실태 조사 및 저감사업 2. 우리마을 하천 등 정기적 환경정비 활동 3. 도시열섬 완화위한 담장 벽면녹화 4. 녹지, 나무밑 잔디훼손부 등 상록 지피식물 식재 5. 미세먼지 흡수원 나무식재 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견학) 7. 기후행동의 날 또는 자전거 타기 동참 캠페인 8.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시민홍보 및 교육사업 9.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활동 10.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11.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홍보 사업 12. 도시텃밭 조성 및 나눔사업 13. 우리동네 아름다운 자연경관 찾기 및 홍보사업
시범사업 권장유형	1. 취약계층 지붕온도 낮추기 사업(지붕 빗반사 페인트 시공 등) 2. 우리마을 빗물저금통 갖기 사업 3. 마을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모니터링 사업 4. 방치된 자전거 수거, 수리, 나눔사업 5. 마을단위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 6.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등 쓰레기 재활용 사업 7. 우리동네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점 진단 및 개선활동 8. 우리동네 탄소포인트제 가입율 2배로 높이기 9. 우리동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사업 10. 우리동네 환경오염원 지도 만들기 11. 우리동네 전기,물 낭비요인 조사 및 개선사업 12. 우리동네 미관저해 환경불량장소 정비사업 13. 절수기 등 에너지 절약제품 공동구매 사업

※ 실천사업 및 시범사업 유형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사항입니다.
 유형에 관계없이 사업비 2백만원 이내면 실천사업으로 신청바랍니다.

[붙임 2]

서식별 작성요령

① 2021년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서 [서식 1]

- 추진단체명 : 고유번호증에 나오는 대로 기재(고유번호증 별첨)
- 대표자 : 대표자 실명 기재(공동대표의 경우 선임대표 1명 기재)
- 사업명 : 사업내용을 함축한 “20자” 이내로 기재
- 협력단체명 : 실제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명 기재
- 사업개요 : 주요 추진내용을 간략히 기재
- 지원사업 분야 : 해당란에 V 표시함
- 접수담당자명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사업비
 - ▶ 보조금은 1백만원~10백만원 한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총사업비의 5% 이상 차지하여야 함
 - ▶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보조금 신청액, 자체 부담액 등 구분하여 기재
 - ▶ 사업비에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당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 운영경비는 제외(보조금, 자부담 공통)
 - ▶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하여야 함
 - ▶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부담 처리
 - ▶ 예산목의 성격상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등 자산적 가치가 생성·증가되는 자본적 경비 편성불가함
 - ▶ 사업수행시 계좌이체로 인한 송금수수료 예상되는 경우 별도 비목 설정할 것



② 협력단체(단체, 공동체, 마을모임) 소개서 [서식 3]

- 협력단체명 : 공식명칭으로 기재
- 대표자 : 대표자 실명을 기재(공동대표의 경우 선임대표 1명 기재)
- 설립년월일 : 실제 창립된 연월일 기재 ※창립 관련 증빙 사진 첨부
 - ▶ 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에서 단체 최초 등록일 확인가능
- 설립목적과 주요사업 : 정관(회칙)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기재
- 회원구성 : 임원명칭, 구성, 회원명부 등은 단체에서 실제로 쓰이는 호칭으로 작성
- 주요 활동분야
 - ▶ 실질적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현재 중심으로 중요한 몇 개만 간결작성
 - ▶ 새내기 마을모임인 경우 앞으로 활동 할 내용을 작성
- 활동실적 : 사업한 내용을 간략하게 연월일 포함 개조식으로 기입
- 예산현황 : 단체(공동체) 예산 구성을 간략하게 기입
- 담당자 : 단체(공동체)의 실무를 담당할 실무자
- 고유번호증 : 단체(공동체)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 (개설은 국세청 문의)
- 통장사본 : 단체(공동체) 대표 명의

③ 2021년 으뜸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 [서식 4]

※ 사업계획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업심사위원들이 사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사업내용을 함축한 “20자” 이내로 기재
- 사업추진 기간 : 2021. 4월 ~ 10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기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기재 (반드시 해야 할 이유)
 - ▶ 사업지역의 일반적 특징(주거, 인구 등), 배경, 필요성 등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 사업장소, 사업대상, 계획인원, 사업내용, 교육 일정표, 추진방법, 예산 마련 방안, 홍보 방안, 이해관계 조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추진계획
 - ▶ 준비과정부터 결과 보고까지의 추진일정, 사업내용, 방법, 예산 기재
- 지역자원협력방안
 - ▶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의 관련 단체 및 기관, 전문가, 행정기관 등
- 향후 발전 및 사후관리 방안
 - ▶ 자치적인 운영이 목적인만큼 사업 후 시설이나 모임 등의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반드시 추진주체들이 협의하여 작성
- 기대효과 : 사업추진 후 효과에 대하여 개조식으로 기입
- 소요예산
 - ▶ 보조금지원, 자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지출항목별로 기재하며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기재
 - ▶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예) 강사료 80,000원×3회 = 240,000원(순서로 기재함)



④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참고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있게 작성하여야 함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은 협력단체는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조례 제23조** 의거 사업비 환수조치 함
- 본 사업비는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추진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건에 한해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됨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급여, 사무실 임차비, 기타 사무실 실비 및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 자본적·경상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고, 강사수당 등은 내부직원(임원, 회원)에게 지급 불가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으로 구분하여 설정,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됨.
단,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창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자부담 예산도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집행률에 따라 자부담률도 동일하게 집행
(잔액발생할 경우 지원금, 자부담 비례 동일하게 남김)
- 사업비는 사업 선정된 후 제출하는 실행계획서와 다를 경우 반드시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야 함

Ⅱ.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추진방법 및 사업예시

- 1. 으뜸마을만들기란 29
- 2. 사업예시 유형 34
- 3. 마을별 사업 추진사례 35



“으뜸마을 만들기”란?

❑ 목 적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으뜸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마을이란

“마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10호 이상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주거지, 거리, 공동시설 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으로 도로·하천·산 등의 경계에 따라 외형상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여 환경·문화·풍습 등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말한다.

❑ 으뜸마을만들기의 정의

“으뜸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환경, 교육, 문화, 복지,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마을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활동

❑ 추진주체

- ⇒ “추진주체”란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10호 이상)
- ⇒ “추진주체”는 지역주민,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 ⇒ “추진주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 사업추진의 주체와 역할

○ 주민

-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부, 은퇴자, 청년, 전문직 종사자 등 일정시간을 마을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주민이나 마을교육 이수자, 시민단체 활동자, 전문가, 교수 등 사전 지식과 역량을 갖춘 주민



○ 주민모임

- 반상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상인회, 친목회, 동호회, 종교 소모임 등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모임.
- 주민모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제 또는 문제에 대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음.

○ 으뜸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는 으뜸마을 만들기의 추진의 목적을 가지고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 주민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 협력단체 및 기관 (시민단체, 자생단체, 민간단체 등)

- 마을활동을 하는 풀뿌리시민단체를 의미.
-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봉사단체, 환경단체, 직업단체 등 지역사회활동, 마을활동 등을 포함하는 단체들이 포함됨.
- 아파트 대표자회-관리사무소, 마을도서관, 주민회, 평생학습센터 등

■ 마을사업 발굴과정

○ 마을조사를 통한 <자원과 의제>의 발굴

- 인적자원 조사는 지역 구성원에 대한 조사로 현재 마을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의 발굴을 의미

분류	상세 내용
인구특성	고령자 현황, 유년인구, 외국인 수 등
가구특성	1인 가수, 한부모가정, 기초생활가구등
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자원봉사 등
개인	재능이 있는 사람 또는 재능 나눔이 가능한 인적자원 등
생활의제	환경문제, 사회문제, 지역생활 만족요인과 불만족 요인 등

- 지역시설에 대한 조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시설이나 유휴지 등을 활용한 마을 활동을 기획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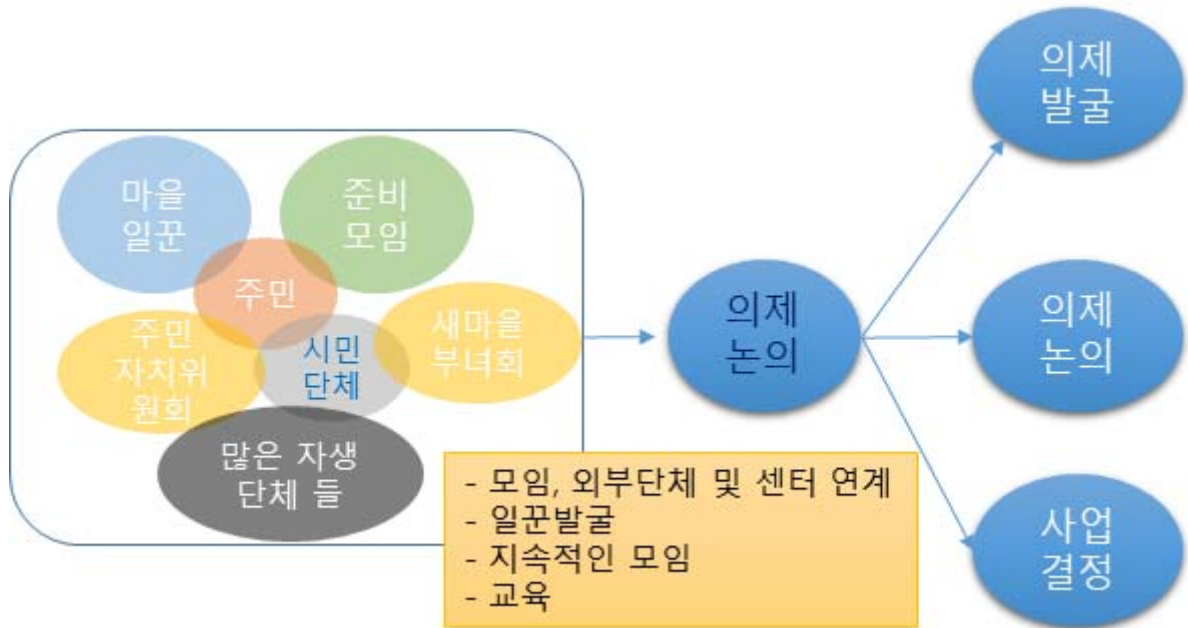
분류	상세 내용
복지시설	복지관, 장애인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등
문화시설	도서관, 문화원, 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 평생교육시설, 놀이터, 공원, 공용주차장, 공공 소유의 유희지, 문화공연 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등

- 지역의제 조사는 마을에서 해결해 나가야 과제를 의미함.
- 의제조사를 통해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마을활동을 수립하게 됨. 사업발굴로 이어지는 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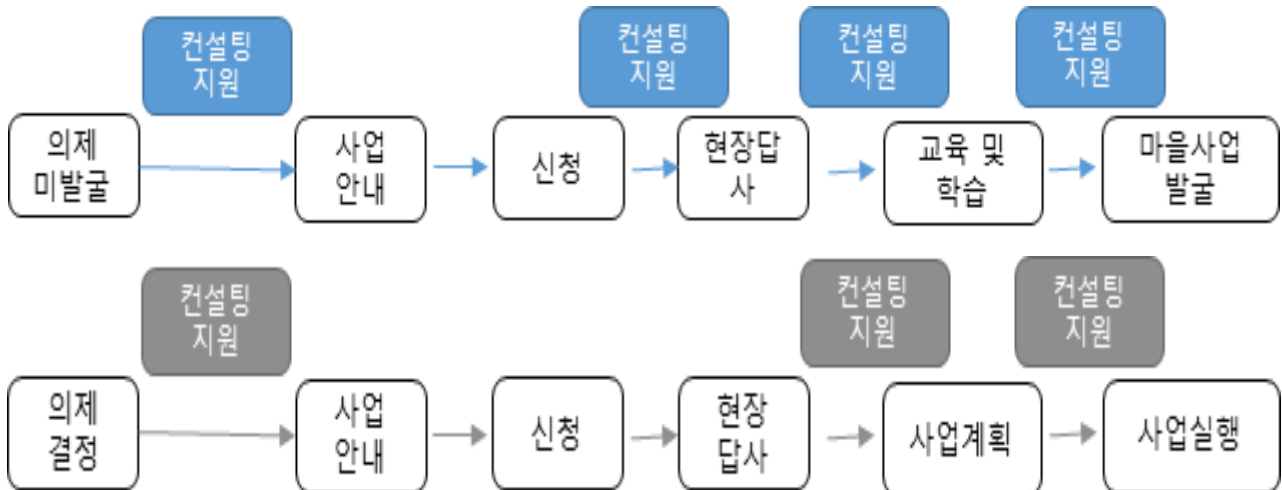
분류	상세내용
복지	노인문제, 여성문제, 다문화문제, 장애인문제 등
교육	자녀교육, 보육, 육아, 평생교육 등
안전	범죄위협,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경제	생활경제, 유통, 고용 등
문화	전통문화유산, 여가활동, 공동체 활동 등
환경	환경오염, 녹지, 에너지 등



■ 사업추진과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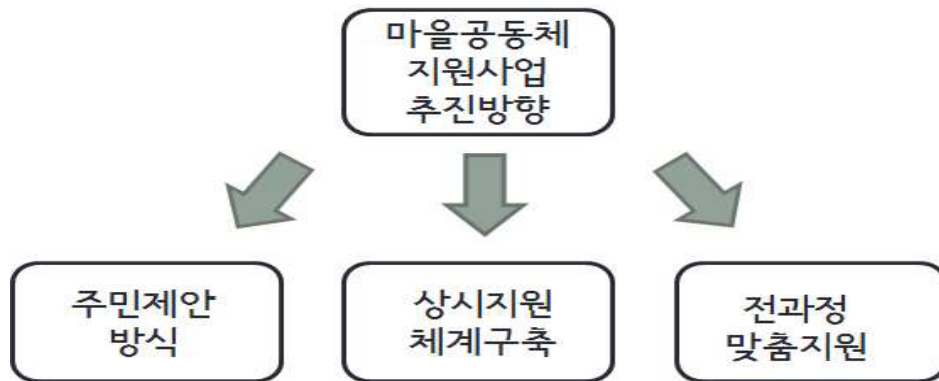


■ 사업추진과정 2





■ 사업추진방향



-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추진
- 마을 및 지역의 역량강화
- 마을 또는 지역중심의 거버넌스(협치)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 다수 시민의 참여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 마을공동체 회복 취지에 맞는 프로세스

사업예시 유형

※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보전 활동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높은 점수가 부여함

공모분야	사 업 예 시
실천사업 권장유형	1. 우수관으로 오수 배출실태 조사 및 저감사업 2. 우리마을 하천 등 정기적 환경정비 활동 3. 도시열섬 완화위한 담장 벽면녹화 4. 녹지, 나무밑 잔디훼손부 등 상록 지피식물 식재 5. 미세먼지 흡수원 나무식재 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견학) 7. 기후행동의 날 또는 자전거 타기 동참 캠페인 8.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시민홍보 및 교육사업 9.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활동 10.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11.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홍보 사업 12. 도시텃밭 조성 및 나눔사업 13. 우리동네 아름다운 자연경관 찾기 및 홍보사업
시범사업 권장유형	1. 취약계층 지붕온도 낮추기 사업(지붕 빗반사 페인트 시공 등) 2. 우리마을 빗물저금통 갖기 사업 3. 마을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모니터링 사업 4. 방치된 자전거 수거, 수리, 나눔사업 5. 마을단위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 6.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등 쓰레기 재활용 사업 7. 우리동네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점 진단 및 개선활동 8. 우리동네 탄소포인트제 가입율 2배로 높이기 9. 우리동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사업 10. 우리동네 환경오염원 지도 만들기 11. 우리동네 전기,물 낭비요인 조사 및 개선사업 12. 우리동네 미관저해 환경불량장소 정비사업 13. 절수기 등 에너지 절약제품 공동구매 사업

※ 실천사업 및 시범사업 유형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사항입니다.

유형에 관계없이 사업비 2백만원 이내면 실천사업으로 신청바랍니다.



마을별 사업추진 사례

< 실천사업 권장유형 >

예시 1 : 우수관으로 오수 배출실태 조사 및 저감 사업

○ 사업내용

- 우수관과 오수관에 대한 주민 조사
- 우수관과 오수관 알기 시민 인식 증진 캠페인
- 가정내 세탁기 위치 확인 및 제자리 놓기

○ 주요프로그램(예시)

- 우수관과 오수관 홍보 캠페인
- 가정내 세탁기 호수 위치 조사 및 이동 캠페인 진행

○ 사업사례- 세탁기 바로 놓기 캠페인(진해시 경화동)



예시 2: 우리마을 하천 등 정기적 환경정비 활동

○ 사업내용

- 마을 앞 실개천(도랑) 및 도심 하천 살리기 및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관 유입오염원 저감 활동

○ 주요프로그램(예시)

- 오염원 찾기 / 도랑지도 그리기 / 실개천(도랑) 청소 및 정비

○ 사업사례

- 주민참여 도랑 청소, 마을환경을 위한 수변식물 식재(상습오염 구간), 친환경 비누 만들기 교실 운영
- 하천 생태학교 및 생태지도, 생물관찰 수업등





예시3 :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담장 벽면녹화

○ 사업내용

- 도심 온도 낮추기 초록커튼, 벽면녹화, 쿨루프, 쌈지공원
- 기후위기 온실 가스 감축 마을리더 및 지도자 교육, 아파트 단지별 주민교육, 캠페인, 현장 견학 등 주민교육
- 창원시 녹색아파트 경진대회 등 관련 프로그램 활용

○ 주요프로그램(예시)

- 도시온도 낮추기 - 초록커튼, 벽면녹화, 쿨루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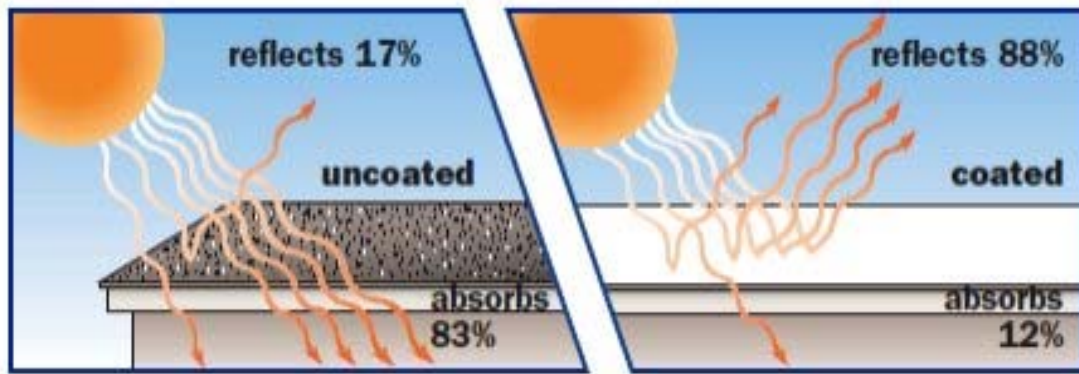




○ 사업사례 : 녹색커튼 활용 등으로 도시온도 낮추기



○ 사업사례 : 쿨루프 활용 등 도시온도 낮추기





예시7 : 기후행동의 날 또는 자전거 타기 동참 캠페인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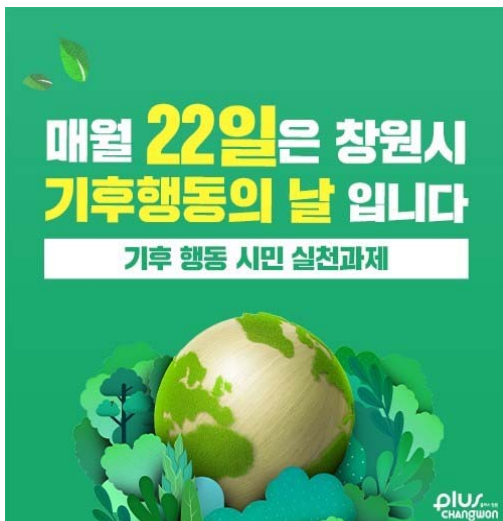
- 기후변화대응 비산업부문 온실 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민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매월 22일에 운영되는 기후행동의 날 홍보
- 자전거 활용을 위한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저감 활동

○ 주요프로그램(예시)

- 자전거 챌린지, 우리마을 누비자 이용 확대 캠페인
-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기

○ 사업사례

-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전거 챌린지





☐ 예시8 :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시민홍보 · 교육사업

○ 사업내용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으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민 홍보
- 우리동네 탄소중립 사례 조사 및 홍보(학교와 연계)
- 탄소 중립 마을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 (탄소 저감 홍보 유튜브 제작 대회 등)

○ 주요프로그램(예시)

- 탄소중립 우리마을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사랑충실 새로운창원

2020. 8월 창원시 제작
기후위기
창원시민
인식교육



2020년 기상청 주관
기후변화 공모전 수상작



예시9 :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활동

○ 사업내용

- 가정, 상업(건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절감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프로그램 가입 홍보 활동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건물)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신청만 하세요!
감축실적이 없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포인트 산정

포인트 산정은 참여한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한 후, 해당항목별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반기별 지급되는 인센티브〉

항 목	5~10% 미만	10~15% 미만	15% 이상
전기사용량	5,000P	10,000P	15,000P
수도사용량	750P	1,500P	2,000P
가스사용량	3,000P	6,000P	8,000P

※ 1P당 2원 이내 지급

인센티브는
그린카드포인트로 지급하거나
그린카드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인센티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2회 지급합니다.



○ 참여대상 : 가정, 학교, 상업시설, 아파트단지 등

○ 참여기간 : 연중 상시 참여

○ 참여방법

- 인터넷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

- 방 문 :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아파트 등 전기·수도·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된 세대는 관리비합산란에 체크

* 단독주택 등 전기·수도·가스요금 고지서를 개별 수령하는 가정은 가입시 고객번호 입력

* 거주지 및 계좌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꼭 변경 신청해야 정상지급 가능

참여방법

참여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할 수 있어요.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난 인터넷 몰라!

그럼 방문신청 하세요.

행정복지센터

참여시 유의사항

- 아파트 등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된 세대는 관리비 합산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 단독주택 등 전기·수도·가스요금 고지서를 개별 수령하는 가정은 가입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기·수도·가스요금
고객번호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엔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거나 관할 구청에 전화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 포인트 산정

-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포인트를 산정
- 에너지 항목별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연 2회 부여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 ~ 10%미만	5,000포인트	750포인트	3,000포인트
10% 이상 ~ 15%미만	10,000포인트	1,500포인트	6,000포인트
15%이상	15,000포인트	2,000포인트	8,000포인트
0%초과 ~ 5%미만 (4회 이상 연속 감축자)	3,000포인트	450포인트	1,800포인트



<시범사업 권장유형>

예시1 : 취약계층 지붕온도 낮추기 사업(지붕 빛반사 페인트 시공 등)

○ 사업내용

- 에너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발굴
- 저소득층 에너지 개선으로 탄소 절감 및 지역 복지사업 확대

○ 주요프로그램(예시)

- 에너지 바우처 연결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 지붕 빛반사 페인트 시공





☐ 예시2 : 우리마을 빗물 저금통 갖기 사업

○ 사업내용

- 홍수 및 가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마을의 빗물저금통 등으로 텃밭 운영, 조경수등에 활용한 녹색마을

○ 주요프로그램(예시)

- 빗물저금통 만들기를 통해 조경수 사용하기
- 빗물이용 공동이용시설 만들기(빗물이용 텃밭 등)

○ 사업사례 : 빗물저금통, 친환경 빗물마을



○ 사업사례 : 빗물활용 텃밭 및 옥상 정원(텃밭)사례

수리산 상상마을 텃밭, 경기 농기원 빗물이용 옥상텃밭 모델 사례





예시3 : 마을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모니터링 사업

○ 사업내용

- 마을 앞 실개천(도랑) 및 도심 하천 살리기 및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관 유입오염원 저감 활동

○ 주요프로그램(예시)

- 오염원 찾기 / 도랑지도 그리기 / 실개천(도랑) 청소 및 정비

○ 사업사례

- 주민참여 도랑 청소, 마을환경을 위한 수변식물 식재(상습오염 구간), 친환경 비누 만들기 교실 운영
- 하천 생태학교 및 생태지도, 생물관찰 수업등





☐ 예시5 : 마을단위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

○ 사업내용

- 길마켓, 아나바다 등 나눔장터 운영

○ 주요프로그램(예시)

- 우리 동네 길마켓 / 아파트 길마켓 운영
- 재활용 마을공방 운영 / 리폼학교 운영

○ 사업사례 : 상남 꿈에그린 길마켓, 반송동 트리비앙 아나바다 장터 토월천 생태학교 리폼학교





예시6 :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등 쓰레기 재활용 사업

○ 사업내용

-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사업

○ 주요프로그램(예시)

-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 1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동네캠페인
-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참여 캠페인

○ 사업사례 :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예시7 : 우리동네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점 진단 및 개선활동

○ 사업내용

- 쓰레기분리배출 문제점 진단 및 주민설문조사
- 마을 쓰레기 발생량 모니터링 활동
- 재활용 쓰레기 완전 분리(쓰레기 제로 마을만들기)

○ 사업사례

- '재활용 100%에 도전하는 쓰레기 없는 마을'
-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소각금지, 자제적인 관리 활동





예시9 : 우리동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사업

○ 사업내용

- 쓰레기불법투기 발생량 조사(매월)
- 불법투기 원인분석 및 감시활동
- 쓰레기불법투기 없애기 주민회의
- 불법쓰레기투기장 환경개선사업(자투리공원/화단 조성)

○ 사업사례

- '재활용 100%에 도전하는 쓰레기 없는 마을'
-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소각금지, 자제적인 관리 활동





예시10 : 우리동네 환경오염원 지도 만들기

○ 사업내용

- 우리동네 환경 오염원인 분석
- 환경 오염원 지도 만들기 및 개선 방안 모색

○ 사업사례

- 환경오염원 청소 및 정비
- 환경오염 근절 캠페인 등



Ⅲ. 「2030 스마트기후환경도시」 「2050 탄소중립」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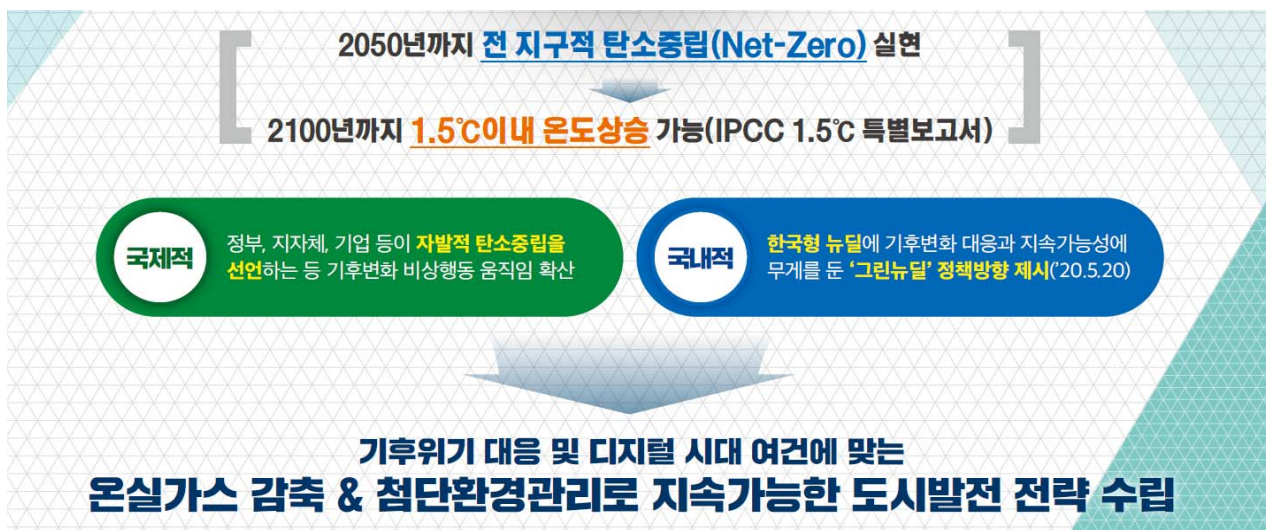


2030 스마트기후환경도시

스마트 기후환경도시란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

○ 추진배경



○ 미래 환경도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기후회복력을 높이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공정한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스마트 기후환경도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선도 도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첨단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 향상과 자원소비 최소화를 지향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선포

-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가뭄, 화재 등 환경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등이 자발적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 변화에 대한 비상행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우리 시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만들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환경관리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2006년부터 추진해온 ‘2020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이라는 환경 비전을 마감하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미래 10년 환경비전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맑은 공기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녹색교통수단 이용 확산, AI기반 대기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체감형 클린시스템 설치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환경기준 보다 낮은 세제곱미터당 12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만들겠습니다.

2. 안전하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 스마트 빗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심하천 수질을 1등급으로 만들고, 수영할 수 있는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스마트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생태환경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계획에 활용하고, 주남저수지는 습지보전과 생태자원화를 추진하며, 권역별 대공원을 조성하여 사계절 푸른 힐링 공원녹지를 만들겠습니다.

4.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는 40% 감축하고 창원형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취약성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5. 청결하고 쾌적한 자원순환형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등 쓰레기 감량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발생량을 30% 감축하고 쓰레기 수거정보시스템 구축, 폐기물 에너지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 첨단 스마트 환경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환경감시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 기반 예방적 환경관리로 전환하고, 첨단 환경감시 장비를 도입하여 불법 오염물질 배출사례를 근절시키겠습니다.

7.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도심 환경교육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평가 위원회와 환경개선 민관 협의회 구성, 으뜸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등 ECO-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 시민과 함께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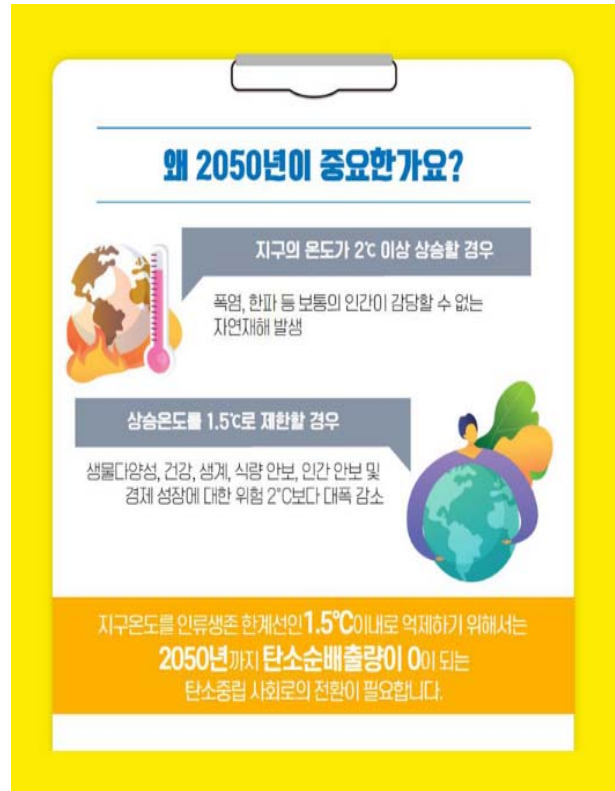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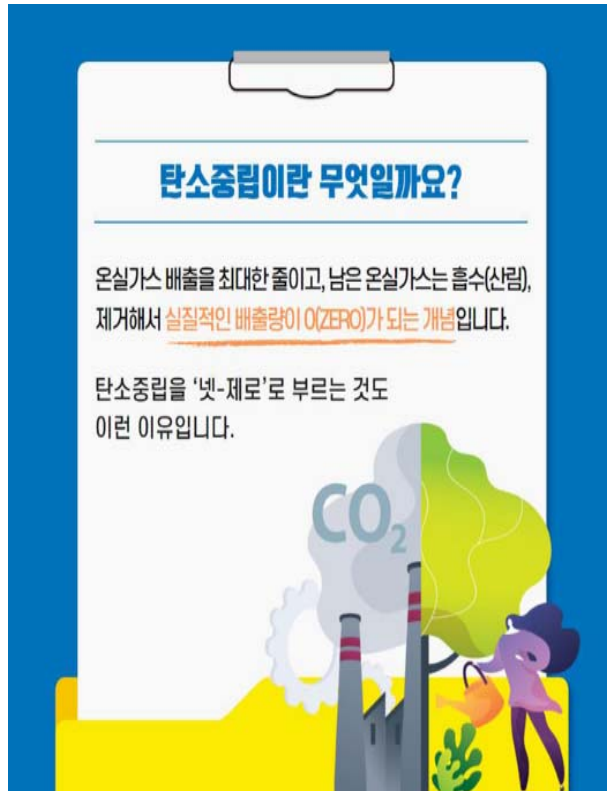
2020. 6. 5.

스마트 기후환경도시창원의 구상





2050 탄소중립이란?



1.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2.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2050년, 왜 1.5℃ 인가?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 이후, 장기적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EU 국가들은 1990대 중반부터 2℃ 목표를 강하게 주장해 왔으며,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종합평가 보고서에 2℃ 목표가 포함됐다. 2℃ 목표는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에 포함되었으며, 이듬해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시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 채택으로 공식화됐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서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작성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한편, 2℃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25% 감축하여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지구 온도상승 1.5℃ vs 2℃ 주요 영향 비교

구 분	1.5℃	2℃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중위도 폭염일 온도	3℃ 상승	4℃ 상승
고위도 한파일 온도	4.5℃ 상승	6℃ 상승
산호 소멸	70~90%	99% 이상
기후영향·빈곤 취약 인구	2℃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억명 증가	
물부족 인구	2℃에서 최대 50% 증가	
대규모 기상이변 위험	중간 위험	중간~높은 위험
해수면 상승	0.26~0.77m	0.3~0.93m
북극 해빙 완전소멸 빈도	100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출처=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LEDs))

3. 국내외 대응현황

•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EU	중국	일본
유럽 그린딜(2019.12)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발표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 (2020.9.22 UN총회, 시진핑 주석)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0.10.26, 의회연설, 스가 총리)

*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 선언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해 왔나요?

- 2019. 3-12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 2020. 3- 15개 부처 범정부합의체
- 2020. 7 ✓ 탄소중립의 첫걸음,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발표
✓ 800여개 광역·기초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0. 9 ✓ 국회 '기후위기 대응 비상결의안' 의결
✓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 자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 2020. 10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국회시정연설)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명칭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였으며, 2019년 12월 ‘제2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5)’의 핵심 의제 또한 ‘행동해야 할 시간(Time for Action)’이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 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장기저탄소발전전략)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

다른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2020.12.18. 기준)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 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EU(유럽연합) : ‘그린딜’ (2019.12)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 중국 :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2020.9.22. UN총회, 시진핑 주석)
- 일본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0.10.26. 의회연설, 스가 총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했다.

11월 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후 11월 22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 라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

○ 준비 과정과 추진 현황

- (2019.3~12)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 (2020.2~) 15개 부처 범정부협의체* - 사회적 논의, 전략마련
- *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 (2020.7) 탄소중립의 첫걸음,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발표
- 80여개 광역·기초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0.9) 국회 ‘기후위기 대응 비상결의안’ 의결
-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 자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 (2020.10)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국회시정연설)

4.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7.)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12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한다.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 활성화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긍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④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 추진체계

-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5.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
 -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 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 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 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희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립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부문별 전략

- (에너지공급)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 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과 연계하여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 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 전력생산(연료전지), 산업(철강·석유화학), 수송(수소차), 건물(도시가스 대체)
- (산업)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 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 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 아울러,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 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 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 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 (수송)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 먼저,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 또한,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해운,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성을 높인다.
- **(건물)**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다.
 -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축수산)**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 아울러,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 **(탄소흡수원)**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 이를 위해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이행기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 먼저,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및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한다.

6.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UN)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2015년 6월)했다.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했다.

- (‘15.6) 파리협정 채택 전(‘15.12), 기후의욕 고취를 위해 자발적인 2030 목표 제출 요구 → ’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 제출(INDC*)
-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INDC) : 각 당사국이 파리협정 채택 전 제출한 잠정 감축목표로 파리협정 발효(‘16.11)에 따라 제1차 NDC로 변경
- (‘18.7) ’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국내 감축 책임을 강화하고, 국외감축 활용을 축소하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 * (前) 국내 25.7%, 국외 11.3% → (後) 국내 32.5%, 산림·국외 4.5%
- (‘19.12) 기존 BAU 방식의 2030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개정 완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 (前) ’30년 BAU 대비 37% 감축 → (後) ’17년 대비 24.4% 감축



이번 갱신안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BAU)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 감축목표 설정방식 비교 >

	절대량 방식	배출전망치(BAU) 방식
2030 목표	•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채택 국가	• 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 개국	• 멕시코, 터키, 에티오피아 등 80여 개국
특징	• 명확한 감축의지 표명 •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공개 • 국제사회 높은 신뢰	•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BAU 가변성 • 국제사회 낮은 신뢰

(출처=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확정 보도자료)

아울러,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7. 관련기사 / 참고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기사 · 보도자료

- [관련기사 모음] 정책브리핑 > 기획&특집 > 정책포커스 > 2050 탄소중립
- [카드뉴스] “탄소중립,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2020.11.06. / 환경부)
- [대통령 연설문]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 (2020.11.27. / 청와대)
- [정책뉴스] ‘2050 탄소중립’ ...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2020.12.03. / 정책브리핑)
- [보도자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20.12.07. / 관계부처 합동) | 추진전략 바로보기
- [카드뉴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08. /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2020.12.15. / 관계부처 합동)
-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자료 보기(붙임)
- [정책뉴스]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기후목표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2020.12.15. / 환경부)
- [정책뉴스] 거스를 수 없는 ‘2050 탄소중립’ …내년 주요 추진 사업은 (20.12.18. / 정책브리핑)

참고자료

-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 환경부)
- [조약정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발효일 2016.12.3.]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교정책] 기후변화 · 환경 분야 (외교부)





[기후위기] 2050년 창원에 벚꽃이 사라진다고? 왜??

봄이와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상단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YouTube “2050년 창원 사라진 벚꽃” 검색



IV. 으뜸마을만들기 회계처리기준 (요약본)



『으뜸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회계처리 기준(요약)

『으뜸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친환경 마을로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하며, 단체운영경비(인건비, 사무실운영비)나 자본적 경비(시설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등 활동비는 지원을 배제함

□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 다른 명의 혼용 및 단체명의로 다른 통장,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정리
-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및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인 단체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통장, 회계장부(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반드시 첨부),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 간이영수증은 불인정함

- 보조금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불가능 사항에 대해서는 계좌입금 조치

☞ 강사비 · 회의참석비 · 원고료 · 발표료 · 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 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 · 생년월일 · 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예시 :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 비목 간 변경 및 비목 내 소액금액 조정 사용 등)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단순인건비,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등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징수대상금액 : 지급금액이 125,000원 초과 시)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 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추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추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민간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및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 집행의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하여 집행 원칙,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철저
(예시 : 2개 업체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등)
 - 각종 인쇄비는 해당업체 원가계산내역을 첨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지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 예산회계 규정 등에 정하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
- 회계 지출서류(영수증 등) 관리
 - 모든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함
 - 동일 비목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을 동시에 집행할 경우 지출 결의서와 영수증에 그 내역을 명기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사업추진에 대한 증빙사진은 촬영 보관 후 정산 시 제출
 - 보조금으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에는 창원시 으뜸마을지원사업비로 발행하였음을 명시
 - 으뜸마을만들기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보도자료 및 업무 보고에는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임을 표시
 - 보조금의 부정집행이 확인될 경우 지원사업 취소 및 교부금 일체를 회수하며, 유·형령으로 고발조치 할 수 있음

※ 보조금집행 처리과정(예시)

- 단위사업추진계획 → 예산집행품의(내부품의 : 견적서 등 첨부) → 계약체결(계약서작성 등 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 지불(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계좌입금 증빙서류 첨부) → 회계장부정리
-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 2021년 창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항목은 3개 항목 20개 비목으로 구성된다.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 건 비	강 사 비	특별 강사 - 전직 차관(급) - 차관급, 대학총장 - 전직 공기업대표 - 기초자치단체장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1시간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1급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기업 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언론인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2급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3급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인재개발원 등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1시간 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1시간 6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강사로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계좌이체확인서 첨부) ※ 강사로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 ※ 원천징수는 강사로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천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로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 건 비	회의 참석비	- 2시간이내 70,000원 - 2시간 30분 초과 시 100,000원(1일 1회에 한함)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 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 70,000원 /2시간이내 - 100,000원 /2:30 이상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 단위사업당 200,000원 한도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0,000원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지 30매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0,000원/장 - 500,000원 /책자 1권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자, 임직원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 8,720원/1시간 - 69,760원/1일 - 1인당 월 60시간 초과 금지	2021년 최저임금 기준																																		
	통역료	<table><tr><th>통역 언어별</th><th>통역방법</th><th>1시간까지</th><th>6시간까지</th><th>6시간초과시</th></tr><tr><td rowspan="2">영어, 독일어, 아랍어</td><td>동시통역</td><td>500,000</td><td>800,000</td><td rowspan="2">매시간당 - 영어 150,000 추가 - 독일어 100,000추가</td></tr><tr><td>순차통역</td><td>500,000</td><td>800,000</td></tr><tr><th>언어별</th><th>통역방법</th><th>1시간까지</th><th>6시간까지</th><th>6시간초과시</th></tr><tr><td rowspan="2">일어, 중국어</td><td>동시통역</td><td>600,000</td><td>700,000</td><td rowspan="2">매시간당 100,000추가</td></tr><tr><td>순차통역</td><td>600,000</td><td>700,000</td></tr><tr><td rowspan="2">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td><td>동시통역</td><td>600,000</td><td>800,000</td><td rowspan="2">매시간당 100,000추가</td></tr><tr><td>순차통역</td><td>600,000</td><td>800,000</td></tr></table>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 요율 적용 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 추가 - 독일어 100,000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 추가 - 독일어 100,000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번역료	<table><tr><th>번역 방법별</th><th>번역언어별</th><th>번역 단가기준</th><th>단가</th></tr><tr><td rowspan="3">한국어 → 외국어</td><td>영어</td><td>한국어 원문1자당</td><td>최저 160원</td></tr><tr><td>일어</td><td>한국어 원문1자당</td><td>최저 100원</td></tr><tr><td>중국어</td><td>한국어 원문1자당</td><td>최저 140원</td></tr><tr><td rowspan="3">외국어 → 한국어</td><td>영어</td><td>영어 1단어당</td><td>최저 180원</td></tr><tr><td>일어</td><td>일어 1자당</td><td>최저 80원</td></tr><tr><td>중국어</td><td>중국어 1자당</td><td>최저 140원</td></tr></table>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번역 방법별	번역언어별	번역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1자당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1자당	최저 140원										
번역 방법별	번역언어별	번역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1자당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1자당	최저 140원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 업 진 행 비	국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시외여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시외여비 중 자가 차량 사용 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000/1일 －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박 기준 ※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	－ 50,000원/1박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만으로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8,000원/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오프셋 인쇄 지양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50만원이하 생략 가능)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50만원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50만원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장소 임차 비용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필수		
	송금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국외 여비	국외 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 항공료 지출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 시된 증빙자료, 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해외 사용경비 집행기준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에 준함 ※ 전자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 사용 영수증 스캔 하여 파일로 첨부 ※ 사업 관련 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 사진 첨부		제2호나목 적용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활동비		활동비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자부담 우선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집행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서류 (계획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필수 첨부	총사업비 기준 10%(보조금 5%)이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한함
	특근 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 필수 첨부	8,000원/1인1식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사용금지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 금지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비용		
	송금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동산·부동산 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시·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산적 가치가 생성·증가되는 자본적 경비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한 경우만 가능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 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한 경우에만 가능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구입비, 다과회·식비, 임직원 급량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추진

- ※ 물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표준, 약식)를 반드시 첨부할 것(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
- ※ 지급기준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조정 가능

□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요령

가. 지방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1) 집행할 대상(물품구입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여부 확인
- (2)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 (3)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 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 원인행위(계약과정)를 하고
- (4) 물품 또는 용역품을 납품(제공) 받아 검수를 필한 뒤
- (5)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강사료, 단순인건비는 원천 징수를 필하고 지급)

◆ 집행처리과정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내부품의서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 지불 및 계좌입금(세금계산서 징구) ⇨ 회계장부 정리
- 체크카드 결제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내부품의서 ⇨ 체크카드 결제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나.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 사업별로 1개 사업에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 증빙서류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 편철
-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철·관리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정정 내용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며,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사업비 집행 작성예시



「예산승인 변경요청 공문」 작성 예시

○○○(단체명)

수 신 자 담당부서장

제 목 202○년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변경승인 신청

「202○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 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사업
2. 보조금 : 금3,000천원(보조금2,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3.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명	지출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내역	비고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계		2,000,000	1,000,000	2,000,000	1,000,000	300,000	
○○○○	강사료	1,000,000		1,000,000			
	인쇄료	700,000		800,000		100,000	
	장소대여비	300,000		200,000		△100,000	
	식비		1,000,000		1,300,000	300,000	

4. 변경사유

- 인쇄비 : 당초 예정했던 인원보다 행사참여 인원이 증가
- 장소대여비 : ○○○기관의 협조로 장소대여료 절감 끝.
- ※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첨부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2○. . .) 접수 (2021. . .)

우 ○○○-○○○ 창원시 의창구 ○○동 ○○-○

전화 055)000-0000/ 전송 055)000-0000/ (이메일 주소)



「지출품의서」 (=내부품의공문) 작성 예시 : 물품구입 예시

○○○(단체명)

수 신 자 내부결재

제 목 ○○○사업 물품구입

202○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코자 합니다.

1. 구입금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2. 구입내역
 - 샅 : 3,000원× 30개 = 90,000원
 - 장갑 : 500원× 20켢레 = 10,000원
3. 사용용도 : ○○○○○
4. 사업개요
 - 일시/장소 : 202○. 0. 00(목) 10:00~12:00/ ○○○○○
 - 참석인원 : ○○○ 등 200명
 - 사업내용 : ○○○
5. 구입방법 : 카드결제

붙 임 견적서 1부. 끝.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2○. . .) 접수 (202○. . .)
 우 ○○○-○○○ 창원시 의창구 ○○동 ○○-○
 전화 055)000-0000/ 전송 055)000-0000/ (이메일 주소)



「지출품의서」 (=내부품의공문) 작성 예시 : 급식비 품의예시

○○○ (단체명)

수 신 자 내부결재

제 목 ○○○사업 참가자 급식비 지급

○○○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소요예산 : 금90,000원(금구만원)
2. 사업내용
 - 일 시 : 202○. 0. 0. 12:00
 - 장 소 : 업소명(업소 주소 기재)
 - 참석인원 : ○○명
2. 결재방법 : 카드 결제
3. 지출항목 : (자부담), 보조금, ○○○, (급량비)

붙 임 행사계획 1부. 끝.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2○. . .) 접수 (202○. . .)
 우 ○○○-○○○ 창원시 의창구 ○○동 ○○-○
 전화 055)000-0000/ 전송 055)000-0000/ (이메일 주소)



「지출품의서」 (=내부품의공문) 작성 예시

○○○(단체명)

수 신 자 내부결재

제 목 ○○○세미나 개최비용 지출계획

201○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출코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 202○. 0. 0(0) 14:00 ~ 17:00/ ○○○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NGO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추정금액 : 1,030,000정도(보조금 1,000,000 자부담 3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03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 200부	
보조금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원/1시간+추가50,000원) × 2인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자부담	식비	진행요원 중식비	30,000	5,000원 × 6명	

붙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2○. . .) 접수 (202○. . .)

우 ○○○-○○○ 창원시 의창구 ○○동 ○○-○

전화 055)000-0000/ 전송 055)000-0000/ (이메일 주소)



약식 「지출품의서」 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약식)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일금일백만원정 ₩1,000,000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202○.7.15
-------	---------	------	-----------

내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 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원/h+추가50,000원) × 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 10매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합계		1,00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	-------------------------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2○.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일금팔십이만원정 ₩820,000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0. 0	지출부 기재	202○.0.0
------------	-----------	--------	----------

내역

지출결의 번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인쇄사	김○○	Check카드
A-07-15-0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국민 계좌번호
A-07-15-03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	Check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검수사진 1부 등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약식 「출장결과보고서」 예시

출장결과보고서

담 당 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
				재

출 장 자	○○○	소 속	○○			
출 장 지	부산					
출장목적	자료 수집 외					
출장기간	(출발) 202○년 ○○월 ○○일 (도착) 202○년 ○○월 ○○일 (박 일)					
출장 여비 사용 내역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교통비	열차표 (왕복)	100,000		체크카드	
	식 대	출장 시 식대 지급	5,000	○○식당	체크카드	
	기 타	음료수	800	-	현금	
합 계		105,800				
출 장 내 용						



「물품검사(수)조서」 예시

물 품 검 사(수) 조 서				
계약건명				
납 품 자	상 호		성 명	
계약금액	금100,000원 (금일십만원)			
납품년월일	20 . . .(수)			
검사년월일	20 . . .(수)			
【검 수 내 역】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 . . 검수자 : ○○○○ 회계담당자 ○○○ (인)				



「각종 사업시행 대장」 예시

○○○ 사업(교육,회의,행사 등) 작성 대장		
행 사 개 요	사 업 명	○○동 벽화마을 만들기
	일 시	20 . . . (금) 15:00~17:00(2시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참 여 자	○○○ 등 10명
제 목	특색있는 벽화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주요내용 및 예산지출내역	- 내 용 : 지역 대학과 협업방법 및 벽화조성 내용, 추진방법 등 의논 - 예산지출내용 : 식비 8,000원 * 10명=80,000원(자부담) 불임 교육(회의)자료 1부.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비 고		





□ 강사료, 원고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입금증(송금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 강의 확인서, 강사자격 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의관련 사진
 - 건당 125천원 초과 시 원천징수 및 납부
 - 예시1) 같은 날짜 동일인 2회 이상 강의 :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125천원 초과시 대상
 - 예시2) 다른 날짜 동일인 2회 이상 강의 : 합산하여 지급하여 125천원 초과시 대상
 - ↳ *해당 일자별로 지급가능하며 건당 125천원 미만이면 미대상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대상 수당에 포함 안됨
- 원고료는 강의교재 제작시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 기준 지급하고, 원고 사본 첨부 하여야 함
 -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 기존 원고의 재활용 및 수정원고
 - 타 저작물 복사원고
 - 목차,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록

◆ 강사료 지급내역 예시

강사료 지급내역(서식)

성명 (구분)	강의 일자 (시간)	주제	강사료	지급금액				송금 (계좌번호)
				계	실 수령액	소득세	주민세	
홍○○ (일반)	20. . . (2시간)	0000000	강의료150,000 원고료110,000	260,000	237,120	20,800	2,080	국민 120-600-7891
김○○ (일반)	20. . . (2시간)	0000000	강의료150,000 원고료110,000	260,000	237,120	20,800	2,080	우리 820-700-6891

☞ 강사료 계산방법

예시1. 강의료 260,000원 : 필요경비 260,000 * 0.6 = 156,000원
 기타소득금액 260,000원-156,000원 = 104,000원
 소득세 104,000원 * 0.2 = 20,800원
 주민세 20,800원 * 0.1 = 2,080원

예시2. 강의료 260,000원*8.8%=22,880원
 22,880÷1.1=20,800원(소득세)
 22,880-20,800원=2,080원(주민세)

※ 성명(구분) 예는 특급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구분 기재

※ 강의료 산출란에는 단가(시간, 초과시간)를 기재한다.

- 기재예시 : 150,000원(1시간 100,000원, 초과시간당 50,000원)



◆ 강의확인서 예시

강의 확인서

강의	· 주제 : · 일시 : 202○. . . 14:00~16:00(2시간) · 장소 : · 참석인원 : · 방법 : 책자, PPT 등 기재 · 원고매수 : (원고료 지급시 반드시 기재)				
강사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소 속	명 칭		직 위	
		주 소			
	입금계좌				
사진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강사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인건비성 수당은 건당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의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 ※ 125천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 납부서 작성프로그램(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내역 입력 후 고지서 출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70%에서 '19.1.1. 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 분	1월~3월	4월~12월	'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소득세	0원		

- * 적용대상 :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 =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 : 0원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기타소득세: 기타소득금액의 20/100,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액의 10/100

□ 적격사업자와 거래

- 보조사업(자부담금 포함)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와 거래
- 거래의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별로 발행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구분		물품구분	발행가능한 증빙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과세물품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면세물품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	과세, 면세물품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면세사업자		과세물품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면세물품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받는자’란 명의를 반드시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로 되어있어야 함.

※ 특례

- 불가피하게 거래금액 3만원 이하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일반영수증 (종전 간이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예외 인정
-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함.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반드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시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견적서 또는 세부산출내역서 등 지출금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거래대금의 결제 시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사업자와 동일 명의의 개인통장(사업용 계좌 원칙)으로 무통장입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이하 ‘계좌이체영수증’이라 함)의 방법으로 입금하고 명세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정산 및 성과보고서(서식)


【서식 3】 보조사업자용

제 출 일 시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FAX	
	e-mail	

2021년 으뜸마을만들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사업명 :)

- ◆ 보조단체에서 사업 정산 보고 시 제출 서식
- ◆ 본 서식을 표준안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사용

단 체 명

직인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20 . . .

□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자부담							

□ 기타(사업실적) :

- 붙임 : 1. 사업비 실적보고서(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3.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 으뜸마을만들기추진위원장 홍길동 (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1

보조사업비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일		○월○일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2

보조금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자부담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원)

구분	비 목	지 출 일 자	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 조 금	소계					
자 부 담	소계					

※ 지출일자는 전용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 지출일자별 작성, 증빙서류 첨부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 감(B-A)	실행율(B/A*100)
계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단위: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비 고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 정산서 첨부물

1.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통장표지 및 통장거래내역 1부.
2. 지출증빙서류: 계좌입금표(무통장입금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물품검수조서, 교육·회의·행사 등 공통서식 작성 등 사업별 필요한 증빙자료
3. 사업관련 유인물 : 책자 및 홍보인쇄시 인쇄물 1부 첨부
4. 사업수행과 추진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사업내용이 확인 가능한 사진(사업추진장면, 현수막 게첨 장면 등), 기타 입증자료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첨부3

통 장 사 본

<통장 앞면> 계좌번호, 예금주 나오는 면

<통장 거래내역(전부)>



통 장 사 본

<통장 제일 뒷면>

<보조금 정산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자 처리>

- ① 발생이자(읍면동) : 세입처리 → 기타이자수입(216-05)
- ② 보조금 집행잔액(시) → 별도 안내(공문)
 - 당해연도 반납 :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
→ 전 읍면동 반납고지서 일괄발행
 - 출납폐쇄기간 이후 반납 : 세입 처리 → 그외수입(224-06)



- 으뜸마을만들기 -

2021년 사업 성과 요약서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장소			
사업기간	20 .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 - ○ - - ○ - -		
추진실적	주민회의 (회수 및 인원수)	회 명 참여	
	주민참여 (회수 및 인원수)	회 명 참여	
	홍보회수 (언론, 인터넷 등)	언론 회, 인터넷 회	
	주민교육 (회수 및 인원수)	회 명 참여	
	사업효과 (미담 사례 발굴)	건	
사업성과	○ ○ ○ ○		
향후계획 / 활용방안	○ ○		



(○○구 00동)

- 으뜸마을만들기 - 2021년 사업 성과보고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비 : 천원
- 주요사업내용

-
-
-

2. 사업목적

-
-

3. 사업내용

가.

-
-

나.

-
-



4.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일		○월○일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5. 세부 추진내용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비고



6. 주민참여 실적

○ 회의 개최 실적 (회 / 명)

추진일정	대상 및 장소	회 의 내 용	참여인원

○ 주민 교육 실적 (회 / 명)

추진일정	대상 및 장소	교 육 내 용	참여인원

○ 주민 참여 실적 (회 / 명)

추진일정	대상 및 장소	사 업 내 용	참여인원

7. 소요예산 (자부담을 포함하여 간략히 기술)

○ 보 조 금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 자 부 담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8. 참여자(그룹)의 인원 및 역할

-
-
-
-

9.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홍보효과 (언론 회 / 인터넷 회)

일 자	게재기관(언론/인터넷)	제 목	비 고

- 사업효과 (미답사례 발굴 건)

-

-

-

- 기타 추진성과

-

-

-



10. 향후계획 [사업 종료 이후]

- ☐
- ☐
- ☐
- ☐

10. 증빙서류 [붙임]

- ☐ 사진자료 10매 이상 필첨
- ☐
- ☐
- ☐
- ☐
- ☐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참 고 자 료

1.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17
2.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작성시 고려할 사항 125



참고자료 1.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 마을이란?

자연, 경제, 문화의 복합체이며,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자치 단위이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슬로건처럼 생각은 세계를 아우르지만 실천의 시작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

2. 마을만들기란?

마을사람들이 중심(주체)이 되어, 마을의 장점과 자원을 대상으로, 마을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계획 실천하여,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

3. 마을만들기의 성공요건

1) 지역의 가치발견 - 자원 및 문화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자원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역에 분포하는 기존의 자원과 함께 앞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폭넓게 수집·정리하여 리스트화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태까지 자원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자원도 마을의 주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 자원의 잠재적인 가치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산학, 지리와 역사, 문학, 경관공학, 생태학, 사회학 및 민속학 등 다양한 지식이 활용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의 가치는 기상, 자연, 인문적 자연 풍경, 시설물,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와 이동물, 이벤트, 경관, 분위기, 음식물, 특산물 및 지방산업, 이야기 및 사건 등 풍토적 가치, 역사적 가치, 사람의 행위적 가치 등 무궁무진하다.

큐슈의 어느 지역에 23호(戶)밖에 살지 않는 조그마한 산골 마을의 이야기가 있다. 언젠가 초등학교 학생이 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빈둥빈둥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마을의 보물이나 찾아보렴”이라고 말을 건넸다. 그 말을 듣고 아이는 보물찾기를 한 결과, 20여개의 보물을 발견하여 돌아왔다고 한다. 재미있는 돌의 형태, 아름다운 들판의 꽃, 맑고 투명하게 보이는 물길, 기분 좋은 숲, 작은 사직, 길가의 불상, 계단식 논에 쌓은 석축, 새끼 꼬는 할아버지, 뭐든지 만들어내는 아저씨, 옛날이야기를 알고 있는 할머니, 국화문양 만들기의 명인 등등을 주위를 찾아보면 보석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것을 지도로 만들어 보면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낀다. 조그마한 부락이라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는 잘 몰랐던 보물이 찾아보면 자꾸자꾸 나온다. 문제는 그것을 찾아내는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이다.

- 다무라 아키라의 마을만들기의 실천 중에서 -

2)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주민은 마을의 일부이자, 마을의 보호자, 마을의 파괴자이다.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위 하는가에 따라 마을에 있어서 주민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다음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

- ①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주민은 마을을 이용하는 최고의 고객이자 생산자다.
- ② 주민의 역량과 현지사정에 맞는 마을만들기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③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지역 주민을 교육시켜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강사나 생태해설사, 자원봉사자 활용한다면 녹색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창출을 만들 수 있고 부족한 지도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간단한 워드프로세스나 OA교육, 독서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④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에 대한 주민의 인식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 것에서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 ⑤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낭비를 최소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급지도력을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다. 이처럼 주민 참여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의 일부이면서 나아가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의 개발, 진행, 평가, 기획,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⑥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터전에 개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발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⑦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서 주민들의 호의적인 분위기는 자연환경만큼이나 중요하다. 마을만들기는 이미지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4.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요건들

1) 내부 지도자의 존재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의 의식이나 욕구는 동일하지가 않아서 외부 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대응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 이때 지역사회 내부의 지도자 존재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부 지도자는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통합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대표와 교섭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외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마을이나 여러 지역단위의 개발이 결실을 가져 온데에는 기회요인에 대한 대응을 선도하는 내부 지도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장, 반장, 마을지도자, NGO활동가, 마을의 덕망가, 부녀회, 청년회장, 마을간사 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2) 공동체 조직의 활성화

마을만들기에 따른 편익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부 세력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의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공공부문의 협력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존이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토지이용제도 등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이러한 요인에 대한 통제나 의사결정의 책임은 공공부문에 있다. 공공부문과의 협조관계(partnership)는 성공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4) 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주민참여를 강화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5) 추진체제의 확립

마을만들기를 위한 조직형성의 점진적 과정을 제시하면, 먼저 실무그룹을 형성하여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실무그룹을 모체로 하여 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운영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 내 각 부문의 원활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00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진체제의 확립과정에는 내부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또 추진체제의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각 주민단체와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업 등 각 주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가가 조성되어야 한다.

5. 주민참여의 기본원칙

주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 주체의 원칙

지역의 주체인 주민은 계획의 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계획과정에 자신들의 이해와 입장을 처음부터 참여하여 표현해야 한다.

2) 생활 중시의 원칙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참여와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필요하고, 주민들 또한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지역환경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3) 지속가능성의 원칙

일회적,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지역성 중시의 원칙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문화에 근거한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소속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5) 종합성의 원칙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교육·복지·산업진흥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까지 포함하는 사회통합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6) 파트너십의 원칙

지역주민·행정·전문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며, 주민들은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행정관료와 전문가는 주민의 시각과 사고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공공에 대한 배려가 담긴 계획이 가능해 진다.

7) 주민학습과 개발의 원칙

주민참여를 통한 상호이해 및 사고력 증진으로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의 열의를 고조시키도록 하며, 계획시행 후 주민이 유지관리의 주체가 되어 주민참여의 과정을 통한 주민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8) 자율과 지원의 원칙

주민에 의한 상향식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행위를 행정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주성을 키우도록 한다.

9) 다양성의 원칙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주민의견 수렴 방법을 다양화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0) 투명성의 원칙

현재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민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6. 주민참여 범위

주민참여 범위는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을 의미하는데 주민참여는 전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개발의 실행과 운영, 혜택, 평가와 환류과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1)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이다.

주민참여에 있어서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형태이다. 직접적 참여와 간접적 참여가 있으며, 직접적 참여는 참여자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며, 간접적 참여는 의사 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의할 때를 말한다.

2) 수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이다.

개발사업이 수행될 때 지역사회의 자원을 제공하거나 사업운영과 관리에 참여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직접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3) 혜택 수혜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이다.

혜택에의 참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 혜택에의 참여로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이익을 혜택받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혜택에의 참여로서 개발사업 투자에서 생긴 사회적 이익, 즉 교육, 훈련 및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혜택에의 참여로서 인정과 존경심 등을 받는 것이다.

4) 평가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이다.

평가에의 참여는 직접평가가 있다. 대부분의 주민참여에 의한 평가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집단 속에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직접적 참여로서 평가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여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7. 행정의 역할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과 담당공무원의 적극성 필요하다. 필요한 재정 지원과 같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역할도 강조되지만, 작게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실무자들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방식이나 태도가 중요하다. 행정의 대응방식에 따라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패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1) 쟁점 주제 파악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주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2) 정책형성 및 계획결정에의 참여확보

결정단계에서의 주민참여는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및 계획결정에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정보의 공개

행정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능한 주민에게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은 이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마을만들기에 있어 주민참여의 제도화 추진

마을만들기운동의 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주민이 마을만들기 운동을 주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마을만들기조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약 수백 개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주시 북구가 2004년에 제정한 ‘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가 거의 유일하다.

5) 주민참여 프로그램 작성시 원칙

- 비전을 제시한다.
-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확보한다.
- 전과정 참여,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주민참여 사업(아이템)을 제시한다.
- 편익과 비용을 분명히 한다.

8. 정리하면서

1) 시설을 새로 짓기보단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라.

마을 내에 있는 기존의 건물, 빈집, 유휴지, 마을회관을 여러모로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 이를 통한 독특하고 개성 있는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일본의 하코다테의 오징어 창고 참조)

또 눈에 보이는 시설만들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한 이후에 장사가 안되면 투자비도 못 건지는 것이다. 시설은 언제고 만들 수 있다. 다만 마을 전체적인 방향과 맞아야 한다.

2) 인정이 자원이다. 가슴으로하는 따뜻한 정성을 관광객은 감동한다.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즐거워하고 가슴에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은 훌륭한 시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인정이 있고 정성을 들인 흔적을 발견할 때 몇 번이고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3) 지역주민의 애착심과 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마을만들기는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는 ‘이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어야 한다. 우선 지역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다양한 주민들이 소모임을 통해 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지역민 상호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사 요구를 수렴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분배의 균등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5) 지역단체, 주민들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주민들을 직업별, 전문별, 취미별로 다양하게 그룹화해서 이들 간의 연구회를 만들고 그 결과물을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은 바로 시민단체 하나와 맞먹을 정도로 힘이 있다. 전문가들이 자발적인 지역운동에 참여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과의 협의 혹은 기업과의 상담에서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7) 행정과 파트너십 형성해야 한다. - 거버넌스

행정에 주민참여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요구하고, 행정에 대안을 제시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주민운동이 돼야 한다. 이제는 행정과 대립관계를 넘어서 지역 주민이 행정과 함께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때다. 이 경우 행정과 시민 그리고 기업 등 주체별로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정은 이들 주민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모으는 일에 게을리 해선 안된다. 주민들도 행정에 책임있는 제안과 실천을 보장하는 등 신뢰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8) 좋은 사례를 많이 보고 배우자.

UNDP(유엔개발계획)의 모토가 '선례에 의한 발전'(Development by Good Examples)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좋은 사례를 보고 이를 새로운 모델로 삼아 더불어 발전해나가자는 취지이다. 논어에 '삼인행에 필유아사'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선례에 의한 발전' 아닌가.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 선진국의 흉내내기에 바빴다. 그것도 외형에만 치우쳤지 내용과 본질을 찾는 데는 미흡했다.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진정 선진도시의 '컨텐츠'를 이해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모델을 찾아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2.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작성시 고려할 사항

1. 목표 및 기본방향이 정확해야 한다.

개발목표 - 모델이 될 만한 마을을 선정하는 것도 좋다.

- ① 10년, 20년 후에도 살만한 동네를 만들자
- ② 마을고유의 자산을 연구하고 훼손하지 않는 개발을 하자.
- ③ 아무리 발전해도 인심을 잃지 않는 마을을 만들자.
- ④ 다른지역에서 배우러 오는 마을이 되도록 하자.

2. 기본방향

- ①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의 모습을 지켜나간다.(휴식과 요양)
- ②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하자.(개발주체)
- ③ 친환경 개발을 하도록 하자.(환경보전)
- ④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자.(개발성격)
- ⑤ 독특하고 개성 있는 마을을 만들자.(차별화) - 마을의 자연, 인문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미래 비전을 만들자.
- ⑥ 마을의 문화와 인정을 지켜나가자.(공동체유지)

3. 계획 및 과제

○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합의에 의한 지속적인 실천

- 개발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 합의가 절대 필요하다.
- 주민과 관광객간의 신뢰관계가 필요하다.(풍기문란, 쓰레기 투기 등)
- 장기적인 목표의 설정 및 비전(vision)의 공유
- 외부전문가 활용방안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제도 시행)

○ 공동관리 및 운영체 설립 방안

- 향후 공동관리 및 이익의 분배문제
- 주민기업 또는 법인체 설립 등
- 사업의 손익분석,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 수익사업의 확대

- 향후 사업계획의 수립
- 마을 발전의 청사진 마련
- 관광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
- 지역 특산물 발굴, 마을 상품의 개발

○ 마을경관 가꾸기

- 통일된 표지판
- 환경친화적인 마을가꾸기
- 수목의 식재, 돌담, 유채밭 조성, 유자 비자 치자림 조성, 꽃길조성
- 간판없는 마을 만들기

○ 지역문화 전승 및 창출

- 지역의 역사와 전통발굴
- 지역의 이야기 거리 발굴



<참고문헌>

- 강신겸, 생태관광개발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 2001
- 강신겸,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 SERI CEO Information 333호, 2002
- 이원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계획모델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마쓰오 다다스·니시카와 요시아키·이사 아쓰시, 「시민이 참여하는 마치즈쿠리」 , 진영환·임정민·정윤희 옮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연구원 공동기획, 한울아카데미, 2006
- 다무라 아키라, 「마을 만들기 실천」 , 장준호·김선직 옮김, 형설출판사, 2008
- 와타나베 순이치,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 이건호 옮김, 목원대학교 출판부, 2004
- 정현영, 생태관광의 영향지각과 주민참여간의 관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논문, 2001
- 장정진. 2008 함평문화, 함평군청